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60

제출년월일 : 2008.10.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우수 중소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혜택(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서 기업 운영을 통한 기업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드높이고, 기업 활성화의 동기 부여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지원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3.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제4조제1항).

나.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안산시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경기중소기업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4.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제5조제1항).

□ 제정 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의 제2항

①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예산수반사항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가금리 우대 : **기존보전금리(1.5~2%) + 0.25%**

- 산출기초 : 5억(최고한도액)×0.25%/년×3개사/년= 3,750**천원**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 년2회 제공(5매/1개사, 개인3매/1인)

- 산출기초 : **58매**(4개사×5매×2회/년, 개인3명×3매×2회/년)×**30천원**= 1,740**천원**

※ 일반 운영비(보상금)-예산범위 내 제공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1. ~ 2008. 10. 21.

○ 의견접수 : 3건(미반영)

○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 별첨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혜택) ① 시장은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지원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3.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기간은 제5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대상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산시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경기중소기업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4.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배제)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기업복지)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근로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교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 활성화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업진흥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업진흥과장 김 태 호
	담 당 직위·성명	기업진흥담당 이 경 희
	담당자 성명	이 경 희 (481-2281)